#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75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이기헌・박수현・채현일

박해철 · 김준혁 · 이해식

박희승 • 강준현 • 조인철

박선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 내역) 제공을 받은 지 1년이 넘으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사건관계인의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증거인멸·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을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 필요성이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한 통신사실 조회를 하면서도 그 통지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장기간 동안 국민들이 자신의 통신내역이 광범위하게 조회되고 있는지 모르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 가입 정보)와 결합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 내역)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하고 그 통지도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쉽게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명목

상으로는 수천 명에 대해서만 조회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만 명의 통신내역이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그에 대한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게된다는 지적 역시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명예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모두 통지유예의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해 두고 있는바, 이는 통신 내역이라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통지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증거인멸 우려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명예 침해의 우려를 사유로 하는 통지 유예에 한도기간을 설정하여, 통신 조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법률 제 호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의"를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통지유예는, 제1항제2호에 의한 통지의 경우 같은 호 본문의 각 결정을 한 날 또는 같은 호 단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4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 없고, 제1항제3호에 의한 통지의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2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6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 없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통지유예 는, 제1항제2호에 의한 통지의 경우 같은 호 본문의 각 결정 을 한 날 또는 같은 호 단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제6 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4 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 없 고, 제1항제3호에 의한 통지의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2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6년)을 경과 하여 유예할 수 없다.

1.	$\sim$	4.	(생	략)
----	--------	----	----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u>지방검찰청 검사장</u>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다만</u>, 수사처검사가 제2항에 따라 통 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 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수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 ⑦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u>지방법원 또는 지</u>
원의 <단
서 삭제>

④ ~ ⑦ (현행과 같음)